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2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남미영, 장영재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5. 3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F, G 등 총 4명이 있었다.

나. 피고들과 자녀 3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서 2018.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다. 원고는 2005. 7. 29. 소외 주식회사 H에게 여신거래약정을 통하여 여신한도액 4억원의 대출을 해 주었고, 피고의 자녀인 D는 근보증한도액 520,000,000원으로 하여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5420호로 위 대출금 잔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판결에서 D는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83,596,3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1. 9. 30.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D는 2005. 12. 30.경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로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

마. D는 2018. 6. 15.자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2/9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5, 7, 을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사해행위의 성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6. 15.자 협의분할은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인들이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과 피고는 1967. 3. 4. 혼인한 이후로 계속 동거하며 같은 주소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91. 6. 15. 망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생활한 이래로 망인과 피고는 계속 동거 생활을 하여 왔었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혼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② 망인과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생활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7년경부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건강이 악화되어 오고 있었고 2010. 12. 27.자로는 언어 장애 3급의 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③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는 피고만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생활을 해 오게 되었고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생활을 하여 왔다. ④ 망인과 피고의 자녀들은 각 혼인을 하여 분가한 이후에는 망인과 피고를 특별히 부양하지는 않았고, D는 사업 실패 등으로 200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피고 측과 별다른 연락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에 대한 피고의 평소 부양 및 보호 등의 기여를 고려하여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단지 상속 포기보다 간명한 절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를 해 할 정도로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급부가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비록 D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분가한 상태에서 영업상의 대출금 채무에 있어서

근보증을 썼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D에 대한 판결은 2011년도에 진행이 되었으며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가 되었는바, D가 2005년경부터 주로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D 조차도 이 사건 보증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보증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